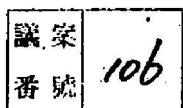


##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提出年月日 : 1992. 3. 30.

提出者 : 大田直轄市長

### 1. 提案理由

現行 大田直轄市 物品管理條例中 内務部의 改正條例準則에 依據 重要物品의 範圍 및 不用品賣却의 鑑定評價基準을 改正하여 處理節次를 簡素化하고 行政能率을 圖謀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 가. 重要物品의 範圍

現行 重要物品의 範圍를 “物品當 單價 50萬원 以上의 物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定數物品”으로 改正하여 現在 重點管理하고 있는 「定數物品管理制度」 및 「物品需給管理制度」와 相互連繫 되도록 함(案 第11條의 2)

#### 나. 不用品賣却 鑑定評價 基準

現行 不用品賣却時 “每物品當 帳簿上 取得價格이 單價 3百萬원 以上인 物品에” 대하여 鑑定機關의 鑑定評價額을 參酌하도록 되어 있으나, 鑑定 基準 金額이 少額이고 活用할 수 없는 폐품까지 鑑定을 하는등 行政力이 浪費되고 있어 이를 “單價 5百萬원 以上의 再活用이 可能한 物品”으로 改正現實化하여 行政能率性을 提高 하고자 함(案 第17條 第4項)

### 4. 參考事項

内務部準則 : 財政01750-151('92. 3. 9)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 대전직할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 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 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제 3항 중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11조의 2 중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의 제4항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 등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 하여야 한다.</p> <p>③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 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p>	<p>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물품</p> <p>③ 분임물품출납원</p> <p>제11조의 2(중요물품의 범위)</p> <p>----- 정수물품 -----</p>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불용품 매각) ①~③(생략)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충량증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7조(불용품 매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 ----- ----- -----
⑤~⑧ (생략)	⑤~⑧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략)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정수물품에 ----- ----- "정수물품"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大田直轄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1992年4月10日  
内務委員會

## I. 審查經過

-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3月 30日 大田直轄市長
- 나. 回 附 日 字 : 1992年 4月 1日
- 다. 上 程 日 字 :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2次 内務委員會(1992. 4. 9)  
上程, 審議, 議決

## II. 提案說明 要旨(提案說明者 : 財務局長)

### 1. 提案理由

現行 大田直轄市 物品管理條例中 内務部의 改正條例準則에  
依據 重要物品의 範圍 및 不用品賣却의 鑑定評價基準을 改正  
하여 處理節次를 簡素化하고 行政能率을 圖謀하고자 함.

## 2. 主要骨子

### 가. 重要物品의 範圍

現行 重要物品의 範圍를 “物品當 單價 50萬원 以上의 物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定數物品”으로 改正하여 現在 重點管理하고 있는 「定數物品管理制度」 및 「物品需給管理制度」와 相互連繫되도록 함.(案 第11條의 2)

### 나. 不用品賣却 鑑定評價基準

現行 不用品賣却時 “每物品當 帳簿上 取得價格이 單價 3百 萬원 以上인 物品에” 대하여 鑑定機關의 鑑定評價額을 參酌하도록 되어 있으나, 鑑定 基準 金額이 少額이고 活用할 수 없는 폐품까지 하는등 行政力이 浪費되고 있어 이를 “單價 5百萬원 以上의 再活用이 可能한 物品”으로 改正 現 實化하여 行政能率性을 提高하고자 함.(案 第17條 第4項)

## III. 專門委員 檢討 要旨 (專門委員 : 安鍾贊)

本 條例案은 大田直轄市 重要物品의 範圍 및 不用品 賣却의 鑑定評價 基準을 改善하여 處理節次를 簡素化하고 行政 能率 을 圖謀코자 하는 事案으로

改正되는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同條例案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重要物品의 範圍 “物品當 單價 50萬원 以上”에서 “定數物品”으로 調整하여 物品의 效率的인 管理가 되도록 하였으며

둘째, 同條 第17條 第4項에서 規定한 不用物品 賣却에 있어 “每物品  
當 帳簿上 取得價格이 3百萬원 以上”인 物品에 대하여 鑑定價額을  
基礎로 處分하던 것을 “單價 5百萬원 以上의 再活用 可能한 物品”  
으로 調整하여 現實的인 業務 推進에 適合토록 하였음.

本 改正案 內容으로 볼 때 重要物品의 範圍를 現行 地方自治團體  
의 定數物品과 一致시켜 合理的인 物品管理가 되도록 하였으며  
不用品 賣却에 있어서는 鑑定基準金額이 少額이거나 活用할 수 없는  
폐품까지 鑑定을 하는 등 行政力과 이에 따른 鑑定手受料가 不  
必要하게 浪費되고 있어 從前의 物品管理上 問題點을 補完 改善하  
려는 事案으로 肯定的인 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됨.

IV. 質疑 및 答辯 要旨 : 省 略

V. 討論要旨 : 省 略

VI. 審查結果 : 原案 可決

VII. 體系字句 整理 內容 : 置 음

VIII. 其他 必要한 事項 : 置 음